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 대표이사 (참조)

제 목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따른 차내 안내판 설치 재 안내

- 1. 서전버조 2019-248호(2019.10.01)와 관련입니다.
- 2. 여러 차례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전세버스는 차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(법 시행: 2020.4.2, 시정기간: 2022.3.31)하여야 하며 그 설치에 따라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.(기 배포스티커 참조)
- 3.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등 행정관청에서 차량 점검시에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안내판 미부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- 가.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
- 나.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위치, 촬영범위 및 촬영시간
- 다. 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
- 라.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※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상기록장치의 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붙 임:1) 관련공문 및 관련법(여객법, 개인정보보호법) 1부.
 - 2) 기 배포 스티커 예시 1부.
- ※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

부 장 라영석 실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 시행 서전버조 21 - 170호 (2021.09.14)접수 ()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(교통회관 11층) / http://www.tourbus.or.kr 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공개 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